-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-

2020년도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제작투자지원 사업 공모 요강

1. 공모 부문

※ 본 공모는 제작국가가 '대한민국'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

	극영화	다큐멘터리
대상	순 제작비 4억 이내의 저예산 장편영화	기획 완료 후 제작 예정이거나 제작 진행 중인 장편 다큐멘터리
	시나리오 개발 완료 후 제작 예정이거나 현재 제작 중인 작품	
지원주체	**영화 제작사 및 연출자** • 해당 영화 제작에 대한 작품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 주체	
지원조건	2021년 3월까지 제작 완료 후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**월드 프리미어**가 가능한 작품	
	극장용 다양성 영화로 제작 가능한 순수 창작영상물 (원작이 있는 경우, 판권이 확보된 작품)	

2. 공모 자격 : 영화 제작자 및 연출자(감독)

- (개인인 경우) 장편 1편 이상 연출한 경험이 있는 감독
- (제작사인 경우) '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'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이면서 장편 1편 이상 제작한 경험이 있는 제작자
- 대한민국 국적 또는 재외동포('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'에 정의된 자로 외국인 거소증 혹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통해 증빙 必)만 지원 가능

3. 선정 및 지원 내용

㈎ 선정

- (1차) 서류 심사
- (2차) PT(또는 면접) 심사 및 최종 선정

※ 최종 작품 선정 후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제시하는 제작투자지원 약정체결 必

㈏ 지원 내용

- 총 지원금 : 100,000,000원 이내

※ 제작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

※ 선정 편수 및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㈐ 공모 일정

구분	공모 및 접수	2차 심사 대상자 발표	2차 심사	최종 결과 발표
일시	2020.09.04.(금) ~ 2020.09.21.(월)	2020.09.23.(수)	2020.09.25.(금)	2020.09.28.(월)

※ 2차 심사 대상자는 개별 발표

4. 제작투자지원 운영체계

㈎ 제작지원 체계

- 최대 1억 원 이내, 순제작비 내에서 제작(투자) 지원함(부분투자도 가능)

  ※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제작관리, 투자·수익 등 관리 의무 및 보고 의무가 있음

㈏ 투자 체계

- 총제작비 중 전주국제영화제 투자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분배 의무 있음

  ※ 전주국제영화제가 부분투자사인 경우 약정 체결 시 메인투자사의 사전 동의 필요

㈐ 지원 요건

- 필수 공통요건
  -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드시 2021년 4월 9일(금)까지 완성본 DCP를 제출해야 함

    ※ 완성본 조건 : CG, DI, 사운드 믹싱 등 후반 작업까지 완료한 극장 개봉버전의 DCP
  - 극장용 다양성 영화로 제작 가능한 순수 창작영상물로 저작권 및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작품
  - 지원작은 상영본과 홍보물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지정하는 크레딧(Credit) 및 로고를 표기해야 함 (※ 별첨한 '전주국제영화제 지원작 크레딧 가이드라인' 참고)
-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가 가능한 경우, 타 기관이나 영화제 제작 지원작도 중복 지원 가능

5. 공모 방법

㈎ 접수 : 이메일(j_project@jeonjufest.kr) 접수 / * 접수 마감 : 2020년 9월 21일(월) 17시까지

㈏ 제출서류

※ 제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율 양식으로 작성

※ 모든 서류를 알집(AL Zip)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하며, 맥 기반 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 제목 확인 必

※ 알집 압축파일 제목 : 전주시네마프로젝트_제작투자지원_작품명

① 지원 신청서 (제출 서식 1)
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제출 서식 2)

③ 감독 기존 연출작품 포트폴리오 (제출 서식 3)

④ 제작기획서 (비쥬얼 레퍼런스를 포함하여 제출)

⑤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(시나리오 파일에 시놉시스 포함하여 제출)

- 다큐멘터리는 트리트먼트와 러프컷(또는 트레일러) 제출

⑥ 제작비 예산서(총 제작비 내에서 순제작비 구분 必)

⑦ 전체 촬영계획표

⑧ 저작권 소유확인서 (제출 서식 4)

⑨ 제작사 소개서(포트폴리오) 및 사업자등록증 / *제작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

⑩ 성범죄·성희롱 사실 확인서 (제출 서식 5)

- 지원사업 대상자(제작자, 감독 등 주요 참여자)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확인서(양식 별첨)를 제출하여야 함

⑪ 기타(아래 추가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)

- 외부 투자계약서
- 배급계약서
- 배우 캐스팅 계약서

※ 계약서가 아닌 의향서, 단순 협찬 지원 계약서는 인정 불가

[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규격 양식 - 극영화]

• 파일양식 : PDF 또는 한글(hwp) 파일
• 글씨크기 : 표지 및 제목 표기 자유, 본문 11포인트
• 글씨체 : 굴림체, 줄간격 160%, 장평 100%, 자간 0%, 페이지 번호 삽입 필수
• 여백 : 위쪽, 아래쪽, 왼쪽, 오른쪽 각 20mm(머리말, 꼬리말 각 0mm)

※ 각 씬(Scene) 넘버 기재

[트리트먼트 규격 양식 - 다큐멘터리]

• A4 30장 이내의 트리트먼트 - PDF 파일
• 작품 세부 줄거리와 연출의도, 전략 등을 상술하며 자료 조사 및 취재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출 가능하나 논문 자료 등은 요약 정리하여 트리트먼트 작성
• 파일양식 : PDF 파일
• 글씨크기 : 표지 및 제목 표기 자유, 본문 11포인트
• 글씨체 : 굴림체, 줄간격 160%, 장평 100%, 자간 0%, 페이지 번호 삽입 필수
• 여백 : 위쪽, 아래쪽, 왼쪽, 오른쪽 각 20mm(머리말, 꼬리말 각 0mm)

6. 심사내용

㈎ 심사방법

- (1차) 서류 심사 : 구비서류 및 작춤 참신성, 제작 가능성 등 평가
- (2차) PT(또는 면접) 심사 :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심사

※ PT(또는 면접) 심사는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

㈏ 심사위원 구성 : 전주국제영화제 내부 심사위원 구성

7. 응모 제한

㈎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(대표자), 감독은 지원신청 불가(영화산업협력위원회「영화인 신문고」기준)

㈏ 이미 발표된 작품의 표절·리메이크·속편 및 기존 작품을 각색, 혹은 개작한 경우

㈐ 저작권, 판권 및 기타 법적 분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

㈑ 본 지원사업 접수 시 동의하는 내용에 반하는 경우

㈒ 다른 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8. 사후관리

㈎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.

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조(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) “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” 지원 업체(대상자)의 휴폐업, 국세 및 지방세체납,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(대상자)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,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취소함.

㈐ 전주국제영화제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,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(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)할 수 있음.

㈑ 선정자는 매달 집행비 집행내역, 제작 진행 상황, 향후 일정 및 기타 보고사항 등이 포함된 월별보고서를 전주국제영화제에 제출하여야 함.

9. 기타 의무사항

㈎ 제작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

- 사업 신청자(제작자, 감독)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(양식 별첨)를 제출하여야 함.
-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지원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.
- 지원대상자는 촬영 전에 제작 참여자 전원이 ‘성범죄.성희롱 예방 교육’을 수강(교육비는 위원회에서 지원)한 이수 확인서(양식 별첨) 및 제작 기간 중 성범죄.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,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(양식 별첨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㈏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의무

- 지원대상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, 학습권,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,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(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,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)를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.

㈐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

- 지원대상자는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하며,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.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,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.

㈑ 스태프 인건비 최저임금 준수 의무

- 시급(1시간 기준) : 2020년 8,590원 / 월급(209시간 기준) : 1,795,310원

㈒ 스태프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

- <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> 제3조5에 의거 스태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필요

10. 유의사항

㈎ 응모하는 모든 작품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화(영상화)되지 않은 순수창작물이어야 함

※ 이미 개봉된 원작의 속편 또는 시리즈, 드라마의 영화화 등 지원 불가

㈏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됨

㈐ 타 공모전 및 유사 지원 사업 당선작 응모·중복수상 가능함

㈑ 선정 후 표절 사실이 밝혀지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,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㈒ 공모서류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㈓ 최종 선정 후 약정 기간 내 제작 완료 불가 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

㈔ 접수 마감 후 파일의 수정이나 중복 제출은 절대 불가함

㈕ 상위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전주국제영화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◎ **문의처 : 전주국제영화제 프로젝트마켓팀 -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담당자**

- Tel : (02)2285-0562
- 이메일 : j_project@jeonjufest.kr